

직권에 의한 농약품목 등록취소 및 제한처분

[시행 2019. 9. 2.] [농촌진흥청고시 제2019-31호, 2019. 9.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2조(직권에 의한 품목등록 취소 농약)

제3조(제한처분 대상 농약품목과 그 제한내용)

제4조(재검토기한)



직권에 의한 농약품목 등록취소 및 제한처분

[시행 2019. 9. 2.] [농촌진흥청고시 제2019-31호, 2019. 9. 2., 일부개정]

농촌진흥청(농자재산업과), 063-238-0825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의하여 직권에 의하여 품목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제조·수출입 또는 공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알리는데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권에 의한 품목등록 취소 농약) 농약관리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직권에 의한 품목등록 취소 농약은 다음과 같다.

농약 품목명	등록규격	상표명	등록회사	등록취소일
파라티온에틸 유제 (Parathion-ethyl EC)	17%	제일 파라치온 골드	한미합자제일화학(주)	2008년 5월 26일
벤설푸론메틸·몰리네이트 입제 (Bensulfuron-methyl+Molinate GR)	5.17(0.17+5)%	포도대장	신젠타코리아(주)	2008년 5월 26일
트리포린 분산성액제 (Triforine DC)	19%	영일트리포린	(주)영일케미컬	2008년 5월 26일
퀴날포스 입제 (Quinalphos GR)	5%	영일에카록스	(주)영일케미컬	2008년 5월 26일
클로르피리포스·람다D할로트린 수화제 (Chlorpyrifos + Lambda-cyhalothrin WP)	10.5(10+0.5)%	부리바	(주)영일케미컬	2008년 5월 26일
벤설파이드 유제 (Bensulfide EC)	50%	론포	(주)영일케미컬	2008년 5월 26일
디페노코나졸 분산성액제 (Difenoconazole DC)	5%	푸리온	(주)국보사이언스	2008년 6월 28일
테부코나졸 분산성액제 (Tebuconazole DC)	12%	티포라탄	(주)국보사이언스	2008년 6월 28일
나프로파마이드 입제 (Napropamide GR)	2.5%	파워리놀	(주)국보사이언스	2008년 6월 28일
카프로파마이드·에디펜포스 유제 (carpropamid+edifenphos EC)	25(5+20)%	프로왕	바이엘크롭사이언스(주)	2009년 3월 3일
뷰타클로르 유탁제(수입) (butachlor EW)	33%	파워리놀	제이케이(주)	2009년 3월 11일
디코플 수화제	35%	켈센	(주)동부한농	2010년 12월 13일
		미성살충탄	바이엘크롭사이언스(주)	2010년 12월 13일
		경농디코플	(주)경농	2010년 12월 13일
		세찬	(주)동방아그로	2010년 12월 13일
디코플 유제	42%	켈센	(주)동부한농	2010년 12월 13일
다이아지논·페노뷰카브 입제	6(3+3)%	금호동	(주)동부한농	2010년 9월 20일
		다수박	성보화학(주)	2010년 9월 20일
벤퓨라카브·펜프로파트린 수화제	7(5+2)%	알마타	(주)동방아그로	2010년 9월 20일

농약 품목명	등록규격	상표명	등록회사	등록취소일
패러콧디클로라이드 액제	23.1w/w% (24.5w/v%)	그라목손인티 온	(주)경농	2011년 11월 23일 (2012년 10월 31일 이후 해당품목(이미 판매된 농약 포함)을 전량 회수·폐기)
		그라목손인티 온	(주)동방아그로	
		그라목손인티 온	(주)동부한농	
		그라목손인티 온	(주)영일케미칼	
		그라목손인티 온	신젠타코리아(주))	
		그라목손인티 온	한국삼공(주)	
		그라목손인티 온	성보화학(주)	
	24.5%	뉴속사포	(주)아그로텍	
		더블목손	(주)대유	
		파라손골드	전문그린사이언 스(주)	
		그라목손	바이엘크롭사이언 스(주)	
톨릴플루아니드 수화제	50%	유파젠엠	바이엘크롭사이언 스(주)	2012년 4월 18일
테부코나졸,톨릴플루아니드 수화제	65(15+50)%	엄지	(주)동부한농	
디클로플루아니드 과립혼연제	40%	유파젠	(주)동부한농	
델타메트린,디클로르보스 유제	15.6(0.6+15)%	장풍	(주)경농	2013년 3월 4일
프로피소클로르 유제	74.2%	폴프로	(주)경농	
트할로메트린 유제	1.3%	토벌대	(주)아그로텍	
에스펜발러레이트,말라티온 유제	16.25(1.25+15)%	왕스타	(주)동방아그로	
일-메틸사이클로프로펜 마이크로캡슐혼 증제	3.3%	스마트 프레쉬	(주)경농	2017년 9월 12일
일-메틸사이클로프로펜 가스발생혼증제	0.63%	스마트 프레쉬	(주)경농	2017년 9월 12일
일-메틸사이클로프로펜 가스발생혼증제	0.63%	스마트 프레쉬	아그로프레쉬코 리아(유)	2017년 9월 22일

제3조(제한처분 대상 농약품목과 그 제한내용) 농약품목별로 공급을 제한하는 처분 내용을 다음과 같으며, 농약품
목을 등록한 각각의 제조(수입)업자별로 연간 공급할 수 있는 출하량은 농촌진흥청장이 따로 정한다.

농약 품목명	등록규격 (%)	제한 내용	제한처분일
옥소리닉에시드·치아벤다졸 수화제	15(5+10)	국내 공급 금지	2008년 12월 11일
몰리네이트 성분 함유 농약품목		제조 및 출하금지	2008년 7월 1일
사이안화수소 훈증제	98	수입 및 출하금지	2015년 6월 12일
알라클로르 유제	43.7	알라클로르 성분을 함유한 3개 품목의 연간 출하량(알라클로르 주성분량 기준) 합계를 498톤 이내로 제한	2010년 4월 6일
알라클로르 입제	5		
알라클로르·펜디메탈린 입제	40(20+20)		
플랫 수화제	50	연간 출하량(플랫 주성분량 기준)을 28톤 이내로 제한	2010년 4월 6일
다미노자이드 수화제	85	연간 출하량(다미노자이드 주성분량 기준)을 1톤 이내로 제한	2010년 4월 6일
디메토모르프·만코제브 수화제	74.2(7.5+66.7)	만코제브 성분을 함유한 12개 품목의 연간 출하량(만코제브 주성분량 기준) 합계를 1,830톤 이내로 제한	2010년 4월 6일
만코제브 수화제	75		
만코제브 입상수화제	75		
만코제브·마이클로뷰타닐 수화제	67(65+2)		
만코제브·메탈락실 수화제	63.5(56+7.5)		
만코제브·옥사일식 수화제	64(56+8)		
사이목사닐·만코제브 수화제	56(6+50)		
아시벤졸라-에스-메틸·만코제브 수화제	49(1+48)		
클로로탈로닐·만코제브 수화제	75(40+35)		
파목사돈·만코제브 입상수화제	68.75(6.25+62.5)		
펜뷰코나졸·만코제브 수화제	66.5(1.5+65)		
프로사이미돈·만코제브 수화제	65		
네오아소진 액제	6.5	네오아소진 성분을 함유한 1개 품목의 연간 출하량(네오아소진 주성분량 기준) 합계를 3톤 이내로 제한	2010년 4월 6일

농약 품목명	등록규격 (%)	제한 내용	제한처분일
카바릴 수화제	50	연간 출하량(주성분량)을 32톤 이내로 제한	2011년 5월 12일

제4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9. 9. 2.>

부칙 <제2014-42호,2014.1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시행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2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5-8호,2015.4.3.>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17호,2015.6.1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23호,2016.4.6.>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50호,2016.12.22.>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3호,2017.2.3.>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23호,2017.9.26.>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25호,2017.10.12.>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10호,2018.4.26.>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31호,2019.9.2.>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